# 방송광고 업무관리 지침

제정 2012. 8.22 개정 2014. 4.14 시행 2014. 6. 1 개정 2016. 3.21 시행 2016. 4. 1 개정 2016. 8.25 시행 2016. 9. 1 개정 2017. 2.20 시행 2017. 1. 1 개정 2019. 7.15 시행 2019. 8. 1 개정 2020.11.30 시행 2020.11.30 개정 2025. 2.21 시행 2025. 3. 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는 각 방송사의 방송광고영업 대행업무(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대행 업무 포함) 청약자와의 방송광고 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부서 간 세부업무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5> <개정 2025.2.21>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6.3.21.> <개정 2025.2.21>
  - 1. "광고요금"이라 함은 공사가 방송광고 요금표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 2. "청약자"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을 말한다.
  - 가. 광고주로부터 방송광고를 의뢰받아 공사에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회사"라 한다).
  - 나. "가"의 광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사에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광

고주(이하 "직거래광고주"라 한다)

- 3. "직거래"라 함은 직거래 광고주와 공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 4. "대행광고주"라 함은 상기 제2호 가목의 광고회사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를 말한다.
- 5. "운행업무"라 함은 청약자의 방송광고청약에 의거, 방송광고 운행의뢰 및 신탁서(이하 "운행의뢰서"라 한다)내용대로 방송국(또는외주제작사)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제반업무 등을 말한다.
- 6. "악성미수금"이라 함은 광고료가 제33조(광고료 수금기일)에 정한 기한까지 수금되지 아니한 미수금과 부도 발생한 수표, 약속어음 (미 도래분 포함) 및 동일한 청약자의 미수금 전액을 말한다. 단, 미수금 중 회수가 지급보증으로 가능한 경우 제외한다.
- 7. "거래금액"이란 광고료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8. "영업관리부서"라 함은 영업관리업무(광고주 대행계약관리, 신탁마감관리, 광고 관련 세금계산서 업무, 수금관리, 지급보증관리 등)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9. "영업정책부서"라 함은 영업정책업무(방송광고 제도, 요금 및 수수료 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 2 장 판 매

- 제3조(판매지역) 본사 및 지사의 판매지역은 직제에 정한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광고요금) ①광고요금의 기본이 되는 방송프로그램 전파료 및 토막광고(자막광고 포함),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광고요금 산정기 준은 영업정책부서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의 경우 외주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기본편성표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광

고요금,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판매요금은 해당 영업부서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8.25.> <개정 202 5.2.21>

- ②특집, 로컬방송순서 등 별도의 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책부서에서 각각의 광고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영업부서 및지사는 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2.21>
- ③영업부서는 판매제고 및 촉진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요금을 할인·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제5조(직거래판매) ①직거래판매시 영업부서 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주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기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코바넷에 등록하고 소속팀장의 결재를 받는다. 단, 지사의 경우는 지사장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6.3.21>
- ②영업관리부서는 위 제1항의 등록 내용을 확인 후 코바넷에 직거래 광고주로 등록, 처리한다. <개정 2016.3.21.> [본조제목개정 2016.3.21.]

# 제 3 장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

- 제6조(방송광고 거래신청 접수 등) ①공사와 신규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 23.>
  - 1. 상법상의 회사
  - 2. 법인등기부등본 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광고대행 기재
  - 3. <삭제 2020.11.30.>
  - ②영업관리부서는 위 제1항과 관련하여 광고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1. 목적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 2. 종목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3. 법인인감증명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 4. <삭제 2020.11.30.>
- ③영업관리부서(영업부서)는 광고회사(직거래 광고주)와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 체결에 앞서 청약자에게 기본계약서와 약관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 제7조(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 체결) ①영업관리부서(영업부서)는 광고회사(직거래 광고주)의 최초 방송광고 청약에 앞서 광고회사(직거래 광고주)와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 ②동일한 청약자에게 2개 이상의 영업부서가 매체별로 방송광고를 판매할 때에는 1건의 기본계약서로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원용할 수 있다.
  - ③영업관리부서(영업부서)는 기본계약서를 2부(공사 보관용, 청약자 보관용) 작성, 체결 후, 공사가 1부를 보관하고 청약자에게 1부를 교 부한다. <개정 2016.8.25>

# 제 4 장 광고회사의 광고주 대행계약 접수

제8조(방송광고대행계약 확인서 접수) ①영업관리부서는 공사와 기본 계약을 체결한 광고회사로부터 덧붙임 양식 <1>, <2>에 따라 대행 계약기간 및 대행품목이 명시된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 또는 간접 광고대행계약확인서(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대행계약확인서"라 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 ②광고회사의 대행계약인정일은 대행계약확인서 접수일로부터 1일 경과일로 한다.
- 제9조(방송광고대행계약 연장확인서 접수) ①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된 광고주에 대한 계약 연장은 덧붙임 양식 <3>, <4>에 따라 방송광고대행연장확인서 또는 간접광고대행연장확인서(양자를 통칭하여,이하 "대행연장확인서"라 한다.)를 접수하여야한다. <개정 2025.2.2 1>
  - ②광고회사의 대행계약연장일은 대행연장확인서 접수일로부터 1일 경과일로 한다.
- 제10조(방송광고대행계약 해지확인서 접수) ①광고주의 방송광고업무 대행계약 해지는 광고회사가 공사에게 위탁한 방송광고가 중지된 후 인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과 관련하여 타 광고회사와의 방송광고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광고주일 경우에는 방송광고대행계약해지확인서, 간접광고대행계약해지확인서(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대행해지확인서"라한다.)를 덧붙임 양식 <5>, <6>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 ③광고회사의 대행계약해지일은 대행해지확인서 접수일로부터 1일 경과일로 한다.

# 제 5 장 지급보증

- 제11조(지급보증 수취) ①영업관리부서는 광고회사(직거래 광고주)가 광고료를 제33조(광고료 수금기일)에 따라 후불로 납부하는 경우 제12조(지급보증 방식) 제1항의 각 호의 하나 이상으로 청약자로부터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수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 ②다만, 제2조 제2호 나목의 직거래광고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경우, 지급보증을 수취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정부기관, 공공기관, 정부투자 기업체
- 2. 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투자금융회사와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량광고주
- 3. 광고회사 대행 중 거래실적이 있는 광고주가 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우량광고주
- 제12조(지급보증 방식) ①제11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수취는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BB0 이상인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A-이상인 비상장기업의 유한책임 연대보증서(단,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정하는 계약예규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준용)
  - 2.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4.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②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 제출 광고회사의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연대보증서 등의 양식을 갖추어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수취하여야 한다. 이 때 연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연대보증기업의 결산 시기에 따라 보증일로부터 당해연도 말 또는 6월말로 하며, 연대보증금액의 인정한도는 연대보증기업의 전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보증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 제13조(지급보증 금액) 지급보증 금액은 다음 제1항의 기본지급보증금 액과 제2항의 추가지급보증금액의 합계 금액 이상으로 한다.
  - ①기본지급보증금액은 방송광고를 개시한 당월 거래금액과 당월 거

래금액에 대한 제33조(광고료 수금기한)까지의 외상거래금액으로 한다.

- ②추가지급보증금액은 제34조(광고료 수금수단) 제2호 내지 제4호 중 부실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금액과 제5호의 광고회사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광고료로 수금할 경우의 해당 금액과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 제14조(지급보증 공제) ①영업관리부서는 광고회사가 제34조(광고료수금수단)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광고료를 방송광고 청약 이전 또는 제33조(광고료 수금기한) 이전에 선입금하거나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영업관리부서는 제13조의 지급보증 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다.
  - ②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 1. 제34조 제2호 내지 제4호 중 부실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청약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0호의 특수관계인인 기업으로 어느 일방의 부도시 연쇄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 ③제1항에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방송광고 당해월말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15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증액 및 감액) ①영업관리부서는 광고회사가 제12조(지급보증 방식)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제출한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 1>
  -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 2.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체
- 3.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 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 ②영업관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회사별 거래금액이 제13조(지급보증 금액)의 지급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 금액을 증액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광고회사별 거래금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지급보증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이 때, 거래금액 변동에 따른 증액과 감액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사와 광고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 6 장 지급보증의 감면

- 제16조(감면 요건) ①영업관리부서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신청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영업관리부서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득하면서, 영업관리부서가 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광고회사의 지급보증금액은 감면될 수 있다. 영업관리부서는 동 세부기준을 코바넷에 게재한다. <개정 2014.4.14.><개정 2020.11.30.>
  - ②영업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로부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20조 제1항의 감면기간 시작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개정 2020.11.30.>
  - 1. 지급보증감면 신청 공문
  - 2. 영업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서 및 부속명세서
  - ③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감면을 받은 광고회사라도 영업관리부서가

정한 지급보증감면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관리부서는 그 광고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영업관리부서는 동 세부기준을 코바넷에 게재한다. <신설 2014.4.14>

- 제17조(감면 금액) ①감면 금액은 본 조 제2항의 산식과 같이 제16조 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보증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서 영업관리부서가 정한 감면요소에 의해 산출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지급보증 감면금액 =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 -보증채무) x 감면비율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회사별 감면 금액이 제13조 제1항의 기본지급보증금액보다 적을 경우, 영업관리부서는 이에 해당하는 금 액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제12조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을 광고회 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 ④공사는 광고회사의 재무상태, 신용상황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제20조의 감면기간 중이라도 지급보증 감면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8조(지급보증 감면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수금기한) ①영업관리부 서는 제16조(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지급보증 감면 광고회사로부터 광고료를 광고월 15일까지 수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금기일이 토요 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개정 2020.11.30.>
  - ②광고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조 제1항의 방송광고료 수금기일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보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사와의 협의한 후 사전승인을 통해 수금 기한을 조정할수 있으나 월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9조(지급보증 감면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수금수단) ①영업관리부 서는 제16조(감면요건)의 지급보증감면에 해당하는 광고회사를 대상 으로 제34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광고료를 수 금하여 한다.

- ②광고회사가 제34조(광고료 수금수단) 제2호 내지 제4호 중 부실채 권 발생우려가 있는 수단 또는 제34조 제5호로 광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지급보증 수취)에 따라 제13조(지급보증 금액) 제2 항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제20조(감면기간) ①지급보증 감면기간은 지급보증감면 요청 연도의 6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광고회사가 제1항의 지급보증 감면기간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영업관리부서는 제16조(감면요건)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제출토록 해야 하며, 연장된 경우에 지급보증감면금액은 제17조(감면금액)에 따라 재산정해야 한다.

### 제 7 장 방송광고 청약관리

- 제21조(방송광고 청약 신청) ①영업부서는 청약자로부터 코바넷을 통하여 청약 신청을 받으며, 청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사원이 코바넷에 청약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신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② 삭제 <2025.2.21>
- 제22조(간접광고 청약 신청) ①영업부서는 간접광고 판매시 청약자로부터 간접광고청약서 1매 및 이행의뢰서 1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간접광고청약서와 이행의뢰서의 작성 및 송부 등 청약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코바넷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② 삭제 <2025.2.21>

# 제 8 장 운행 및 광고주 관리

제23조(운행의뢰 등) ①영업부서는 청약자가 코바넷을 통해 신청한 내

용(방송, 중지, 소재변경 등)을 확인하여 확정처리하고, 코바넷을 통해 영업부서 내의 운행담당자와 방송사(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의경우 외주제작사)에게 업무 연락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5.> <개정 2025.2.21>

- ②영업부서는 광고회사 신탁의 중지, 방송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입력하여, 영업관리부서의 광고회사별 지급보증 한도 관리 및 수금 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제24조(운행결과 점검) 운행담당자는 매일 변동되는 내용(불방, 이동, 특집등)을 변환 처리하여 신탁자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신탁자료와 실제 모니터링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일치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고, 영업부서는 이를 신탁마감 전까지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5조(본·지사간 운행업무)본·지사 및 지사간의 운행업무는 본사의 운행업무 절차에 따른다.
- 제26조(대행계약 인정 제외) 제8조(방송광고 대행계약 확인서 접수)관 런 서류와 제출기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인정하 지 아니한다. 단, 광고회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27조(악성미수광고주대행계약 제출의 예외) 광고회사가 대행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부도 등의 사유로 화의,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거나 공사에 대해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종결될 때까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사에 대한 잔존채무를 완제하거나 공사와 별도의 채무상환협약 등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 장 신 탁 관 리

- 제28조(신탁입력 및 신탁마감) ①영업부서 운행 담당자는 확정 처리된 운행의뢰 내역을 코바넷에서 신탁확정자료로 변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 ②신탁마감 이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월로 이월 처리하되, 12 월에 발생한 신탁에 대하여는 이월할 수 없다.
  - ③영업관리부서는 광고회사 신탁액에 대행계약 인정기간이 만료된 광고주 신탁액의 포함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마감 하여야 한다.
- 제29조(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영업관리부서는 신탁액을 확정한 후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입금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단, 확정마감 후 이월이 불가피하여 발생한 추가마감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추가마감 직후로 한다. <개정 2020.11.3 0.>
- 제30조(입금표의 정정 및 재발행) 발행한 입급표의 내역상 오류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정정 또는 재발행을 할 때에는 관련 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재발행 입금표에는 "재발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신탁집계 및 보고) ①영업관리부서는 본사, 지사의 신탁액을 취합, 신탁액, 매입액, 대행수수료 산출 등 신탁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확정된 매입액은 익월 10일까지 해당 방송국(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의 경우 외주제작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5>

# 제 10 장 수 금 관 리

제32조(입금표 관리 및 교부) 입금표는 영업관리부서장(지사는 지사장)의 책임으로 관리하며, 광고료 수금과 동시에 광고회사 등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고회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부득이 사전교부 요구를 받을 때에는 수금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한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으며,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전자어음 등을통한 전자결제,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입금 등의 수금시에는 교부를생략할 수 있다.

- 제33조(광고료 수금기일) ①영업관리부서(지사는 수금담당 부서)는 광고료를 방송종료 월말 기준으로 익월 22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수금한다. 광고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 소속 국장(지사는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익월말까지 수금한다. 다만 월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②광고료의 수금은 그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수금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균 3개월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을 수금코자 할 때에는 담당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기일을 연장할 경우, 광고회사로부터 연장 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④광고회사가 공사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 및 미지급 발생당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에 게시되어 있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월말을 초과하여 수금하는 경우에도 익월 광고료 지급기일을 초과하거나, 연속하여 3회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광고회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정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이행계획을 해당 광고회사로부터 문서로 접수받아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

### 0.11.30.>

- 제34조(광고료 수금 수단) 영업관리부서(지사는 수금담당 부서)는 광고회사로부터 수금시 다음 각 호의 하나 내지 병용하여 수금하여야 한다.
  - 1. 현금
  - 2.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 등의 금융상품
  - 3. 광고주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단, 광고집행월 기준 광고회사를 통해 공사에 광고방송을 의뢰한 금액 이내로 한다.
  - 4.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광고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한 전자결제
  - 5. 광고회사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 제35조(직거래 광고주의 광고료 수금 등) ①직거래 광고주의 광고료는 방송 청약일 이전에 광고주가 공사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현금입금토록 하는 방식으로 수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3.21> ②광고주가 광고료를 후불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 말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다음 각 호의 수단으로 수금하되 3개월 이내에 현금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광고료 수금일까지의 외상 광고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금일 22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이 경우 담당 본부장의 전결로 한다.
  - 1. 혀금
  - 2.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 등의 금융상품
  - 3. 광고주의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한 전자결제
  - 4. 광고주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 ③광고주가 제2항 제4호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제2항의 지급보증 이외에 추가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④직거래 광고주 (혁신형 중소기업 직거래광고주는 제외)에 대한 광고료 수금, 환불 및 지급보증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영업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3.21.>

[본조제목개정 2016.3.21.]

- 제36조(직거래판매 광고주의 광고료 수금의 특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방송월말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2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제35조(직거래 광고주의 광고료 수금)제2항의 각 호로 수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 1. 정부기관, 공공기관, 정부투자 기업체
  - 2. 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투자금융회사와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
  - 3.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광고주와 수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의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 4. 광고회사 대행 중 거래실적이 있는 광고주가 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우량광고주

[본조제목개정 2016.3.21.]

- 제37조(입금처리) ①영업관리부서는 수금액을 전표입력한 후 즉시 회계관리부서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②광고료의 선수금과 과입금도 제1항의 요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금자의 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선수금은 매월 말일자로 대체 입금 처리한다.
  - ③지사에서 수금한 광고료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어음은 거래은행에 보관하고 현금과 보관어음 중 지급 기일에 결제된 금액은 자체경상비와 회계 담당국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체없이 본사 지정은행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 담당국에서 자금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8조(광고료 과입금액 환불 등) ①방송광고가 종료되어, 광고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직거래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가 광고료 과입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환불요청서, 직거래광고주 또는 광고회사법인명의의 통장사본 첨부)할 경우, 영업관리부서(지사는 수금관리업무 담당부서)는 직거래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와 공사간의 채권, 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개정 2017.2.20>
  - ②「방송광고 거래약관 (광고회사용)」제41조 후문에 따라 대행수수 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광고료를 지불하는 광고회사가 대행수수료 의 지급을 요청(지급요청서, 광고회사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첨부)할 경우, 영업관리부서(지사는 수금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광고회사와 공사간의 채권, 채무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 17.2>
  - ③제①항에 따라 직거래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기한은 환불요청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21.> <개정 2019.7.15.>

[본조제목개정 2016.3.21.] [본조제목개정 2017.2.20]

# 제 11 장 악성미수금 처리

- 제39조(악성미수금 발생보고) ①악성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발생한 배서 어음 및 수표라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전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악성미수금의 발생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금 회수가 지급보증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5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1. 악성미수금 발생보고서
- 2. 삭제 <2025.2.21>
- 3. 방송광고 기본 계약서 사본 및 방송광고 청약내역
- 4. 입금표(미수의 경우)
- 5. 부도수표 또는 어음의 실물
- 제40조(악성미수금의 처리) 악성미수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 미수금 회수가 지급보증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보증 청구절차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1. (조사) 악성미수금은 지체없이 광고주(부도의 경우: 어음,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등)의 재산상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담당 본부장(지 사는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채권확보) 조사된 재산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필하여야 한다.
  - 3. (지급청구) 악성미수금의 지급청구는 관할지방법원(지원)에 민법 소정의 독촉 절차에 의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 절 차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본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4.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은 영업관리담당 직원(지사는 수금관리업무 담당 사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케 할 수 있다.
  - 5. (강제집행) 청구한 미수금에 대한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을 득하였을 때에는 가압류 등을 필한 재산 에 강제 집행하고,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6. (악성미수금 회수) 경락대금 등으로 악성미수금이 일부만 회수되는 경우의 상계처리는 미수금, 약속어음(지급기일순), 수표 순으로한다.
  - 7. (대손처리)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한 경락대금으로 악성미수금

- 을 충당할 수 있으며, 또 여타 재산도 없는 때에는 그 잔액을 회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처리 할 수 있다.
- 8. (사후관리) 대손처리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광고주나 어음,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개인: 생존해 있는 경우, 법인: 청산 종결 이전)의 재산 상태 및 현황 등을 그 채권의 시효 만료 전까지 매 반기별 1회 이상 조사하여 미수금 변제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9. (예외사항) (가)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악성미수금 처리업무는 일반 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며, 본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합리적 으로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나) 조사된 재산이 집달사법 수수료 규정에 의한 집행비용(가압류, 본압류, 감정, 경매수수료 등)에 미달될 때에는 본조 제2호의 가압 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본조 제3호의 지급청구전 또는 청구후라 할지라도 광고주 등과 미수금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합의된 때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 때에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에 의한 약속어 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라) 지사에서 발생하는 악성미수금도 제39조 내지 본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보고 및 대손처리는 영업관리부서 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악성미수금 광고주 등이 본사에 계류 중인 악성미수 광고주 등과 같거나 관련이 있고, 그 재산의 일부가 본사 관할 내에 있는 때에는 본사로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지사간일 경우에도 상호이관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14.>

이 지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 2016.3.21.>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 2016.8.25.>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식 <2016.12.23.>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 2017.2.20>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 2019.7.15.>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 2020.11.30.>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 2025.2.21.>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삭제 2016.4.1>

양식 2 <삭제 2016.8.25>

양식 3 <삭제 2016.8.25>

(양식 1)

### 방송광고 대행계약 확인서

광고주 와 광고회사 <u>간에</u> 방송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대행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대행품목:

변월일 광고주:주소 상호 대표자 (인)(TEL:) 광고회사:주소 상호 대표자 (인)(TEL:)

덧붙임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 대행계약기간 연장시에는 연장개시일 1일전까지 연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가접광고 대행계약 확인서

와 광고회사 광 고 주 간에 간접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대행계약기간 : 년 월 일 -녆 2. 대 행 품 목: 3. 매체및프로그램 : 월 녆 광고주:주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광고회사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 )

덧붙임: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 대행계약기간 연장시에는 연장개시일 1일전까지 연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식 3)

방송광고 대행연장 확인서

와 광고회사 강에 방송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대행계약 연장기간 : 녆 월 일 -월 일 녆 녆 월 일 -월 일 녆 2. 대 행 품 목: 월 일 녆 광고주:주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 광고회사 : 주 소 상 호

덧붙임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인) (TEL: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bigcirc$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 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식 4)

(양식 2)

### 간접광고 대행연장 확인서

와 광고회사 간에 간접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대행계약연장기간 : 년 원 일 -년 일 녆 월 일 녆 월 일 2. 대행 품 목 : 3. 매체및프로그램: 월 년 일 광고주:주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광고회사: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덧붙임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 귀중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식 5) (양식 6)

### 방송광고 대행해지 확인서

와 광고회사 강에 방송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해지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대 행 품 목 :

년 월 일

광고주: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광고회사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

덧붙임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간접광고 대행해지 확인서

간에

<u>광고주</u> <u>와 광고회사</u> 간접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해 지 일 자 : 년 월 일부터

2. 대 행 품 목 :

3. 매체및프로그램 :

월 일 년

광고주:주 소 상 호

대표자

광고회사 : 주 소 상 호

(인) (TEL:

대표자 (인) (TEL: 덧붙임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